

L P G 用 호스 길이

- LPG 용 호스길이는 짧을수록 안전 -

1979. 2. 8 개정, 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및 기술상 기준"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중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할 것", 그리고 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배관중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호스의 길이 3m는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1) 일본 "가정품법" 3편 11장 고압가스 관계시설 중 11.2.5에 "조정기 또는 가스사고 통과 고용내관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전용 고무관은 연소기구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2m이내로 하여야 한다."(당협회의 점검기준도 동일) (2) 미국 NFPA 의 NATIONAL FIRE CODES VOL 5 LPG NO58-64 에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호스는 6피트(1.8 m)를 넘지 않는 최소길이이어야 한다. 또한 한거실에서 다른 거실로 연장하거나 간막이, 벽, 천정, 바닥을 통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행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한 3m는 외국의 예에 비하면 약간 풍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호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고온 누설로 인한 사고 위험도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므로 법상의 규정을 내세우기에 앞서 LPG 를 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영업장소나 세대의 각 연소기구마다 제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에 차등화 입는 한 호스의 길이를 최소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겠다.

참고로 한국공업규격(KS)에는 LPG용 고무호스와 철관호스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